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6. 5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2006. 7. 1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과 관련, 사회복지분야 담당인력의 증원, 「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」 실시, 「개발부담금제」의 부활 등 토지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의 보강 및 2008년부터 시행계획인 사업별예산제도의 준비인력 등 증원인력에 대하여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
- 나. 기능직공무원 결원 및 업무여건을 감안, 일부사무의 담당공무원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, 그간 정원조정 시기별로 부칙에 명시하였던 직급별 한시정원을 별표 2로 일괄명시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정원의 총수를 조정 : 710명 ⇒ 721명 ▷ 증11명 (안 제2조)
 - 증원내역 :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인력 8명, 사업별예산편성 인력보강 1명, 토지관련업무증가 인력보강 2명
- 나.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 : 695명 ⇒ 706명 ▷ 증 11명 (안 제2조 제1호)
- 다.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3조)
 - 정원관리기관별 정원
 - 구분청 : 484명 ⇒ 474명 ▷ 감 10명
 - 동 : 147명 ⇒ 168명 ▷ 증 21명

○ 직급별 정원

- 일반직 6급 : 114명 ⇒ 117명 ▷ 증 3명
- 일반직 7급 : 175명 ⇒ 178명 ▷ 증 3명
- 일반직 8급 : 187명 ⇒ 191명 ▷ 증 4명
- 일반직 9급 : 83명 ⇒ 85명 ▷ 증 2명
- 기능직10급 : 48명 ⇒ 47명 ▷ 감 1명(일반직으로 직종전환)

라. 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2로 명시(안 제3조의2)

○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인력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7.12.31까지로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필요(붙임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기간 : 2006. 5. 18 ~ 6. 2(15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마. 관련지침

-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
(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321, 2005. 4. 22)
-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
(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612, 2005. 5. 12)
-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보강지침
(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2509, 2005. 9. 20)
- 지방자치단체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
(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2652, 2005. 9. 29)
-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지침
(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3985, 2005. 12. 28)
-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승인
(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- 322, 2006. 1. 19)
-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
(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- 1428, 2006. 4. 19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부분중 “710” 을 “721” 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695” 를 “706” 으로 한다.

제3조중 “별표와” 를 “별표 1과” 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 (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) 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조례 제63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부칙제2항은 삭제한다.

조례 제64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부칙제2항은 삭제한다.

조례 제65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부칙제2항은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총 계	구본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
총 계	721	474	15	44	20	168
정무직 계	1	1				
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617	402	9	35	9	162
3급	1	1				
4급	5	3	1	1		
5급	40	17	2	4	1	16
6급	117	81	2	5	3	26
7급	178	132	3	13	2	28
8급	191	123	1	12	1	54
9급	85	45			2	38
별정직 계	1			1		
7급상당	1			1		
기능직 계	102	71	6	8	11	6
6급	3	2		1		
7급	6	5			1	
8급	14	13			1	
9급	32	19	5	3	5	
10급	47	32	1	4	4	6

[별표 2]

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3조의2 관련)

구 분	총 계	일 반 직		존속기한
		7급	8급	
총 계	5	3	2	
기획감사실	1	1		2007. 12. 31
총 무 과	1		1	2006. 12. 31
재 무 과	2	1	1	2006. 12. 31
지역경제과	1	1		2006. 12. 31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구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710명</u>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 기관의 정원 : <u>695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제3조 (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) 구본청, 의회사무국, 보건소, 사업소, 동 등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<u>별표와 같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부 칙 <2005.4.1 조례 제631호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<u>일제강점동원 관련 증원되는 구본청의 정원중 일반직 8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부 칙 <2005.6.22 조례 제644호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<u>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관련 증원되는 구본청의 일반직 7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>부 칙 <2005.12.15 조례 제657호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<u>복식부기회계제도 준비 관련 증원되는 구본청의 정원중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721</u>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706</u> 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 (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과</u> -----</p> <p>제3조의2(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) <u>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</u></p> <p>부 칙 <2005.4.1 조례 제631호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삭 제></p> <p>부 칙 <2005.6.22 조례 제644호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삭 제></p> <p>부 칙 <2005.12.15 조례 제657호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삭 제></p>

현 행

개 정 안

[별표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
총 계	<u>710</u>	<u>484</u>	15	44	20	<u>147</u>
·	·	·	·	·	·	·
일반직계	<u>605</u>	<u>411</u>	9	35	9	<u>141</u>
·	·	·	·	·	·	·
6급	<u>114</u>	<u>87</u>	2	6	3	<u>16</u>
7급	<u>175</u>	<u>127</u>	3	<u>12</u>	2	<u>31</u>
8급	<u>187</u>	<u>130</u>	1	12	1	<u>43</u>
9급	<u>83</u>	<u>46</u>			2	<u>35</u>
·	·	·	·	·	·	·
가능직계	<u>103</u>	<u>72</u>	6	8	11	6
·	·	·	·	·	·	·
10급	<u>48</u>	<u>33</u>	1	4	4	6

[별표 1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보건소	사업소	동
-----	<u>721</u>	<u>474</u>	--	--	--	<u>168</u>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617</u>	<u>402</u>	--	--	--	<u>162</u>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117</u>	<u>81</u>	--	<u>5</u>	--	<u>26</u>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178</u>	<u>132</u>	--	<u>13</u>	--	<u>28</u>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191</u>	<u>123</u>	--	--	--	<u>54</u>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85</u>	<u>45</u>			--	<u>38</u>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102</u>	<u>71</u>	--	--	--	--
·	·	·	·	·	·	·
-----	<u>47</u>	<u>32</u>	--	--	--	--

<신 설> [별표 2]

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3조의2 관련)

구 분	총계	일 반 직		존속기한
		7급	8급	
총계	5	3	2	
기획감사실	1	1		2007.12.31
총 무 과	1		1	2006.12.31
재 무 과	2	1	1	2006.12.31
지역경제과	1	1		2006.12.31